

제품안전 관리제도 소개

온라인쇼핑몰 제품안전 담당자 온라인교육
2023.11.03.

제품시장관리과
배승호 연구관

(baesh1219@korea.kr 043-870-5428)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주요 업무

표준

국가표준(KS) 총괄 및 국제표준화 기구(ISO/IEC) 대표기관

- 범 부처 표준정책 조정, 국가표준(KS) 제도운영·관리
- 국제표준 선점을 위하여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제품안전

전기, 생활(공산품), 어린이용품 등 제품안전 정책수립

- 안전인증 등 제품 시장출시 전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
- 안전성조사, 리콜 등 제품 시장
출시 후 시장감시 시스템 운영



적합성평가

적합성 평가(시험·인증·인정) 체계 및 법정계량 제도 운영

- 시험인증 관련 국가 적합성 평가체계 운영
- 공정한 상거래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운영
- 시험인증산업 육성



기술규제

해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 기술규제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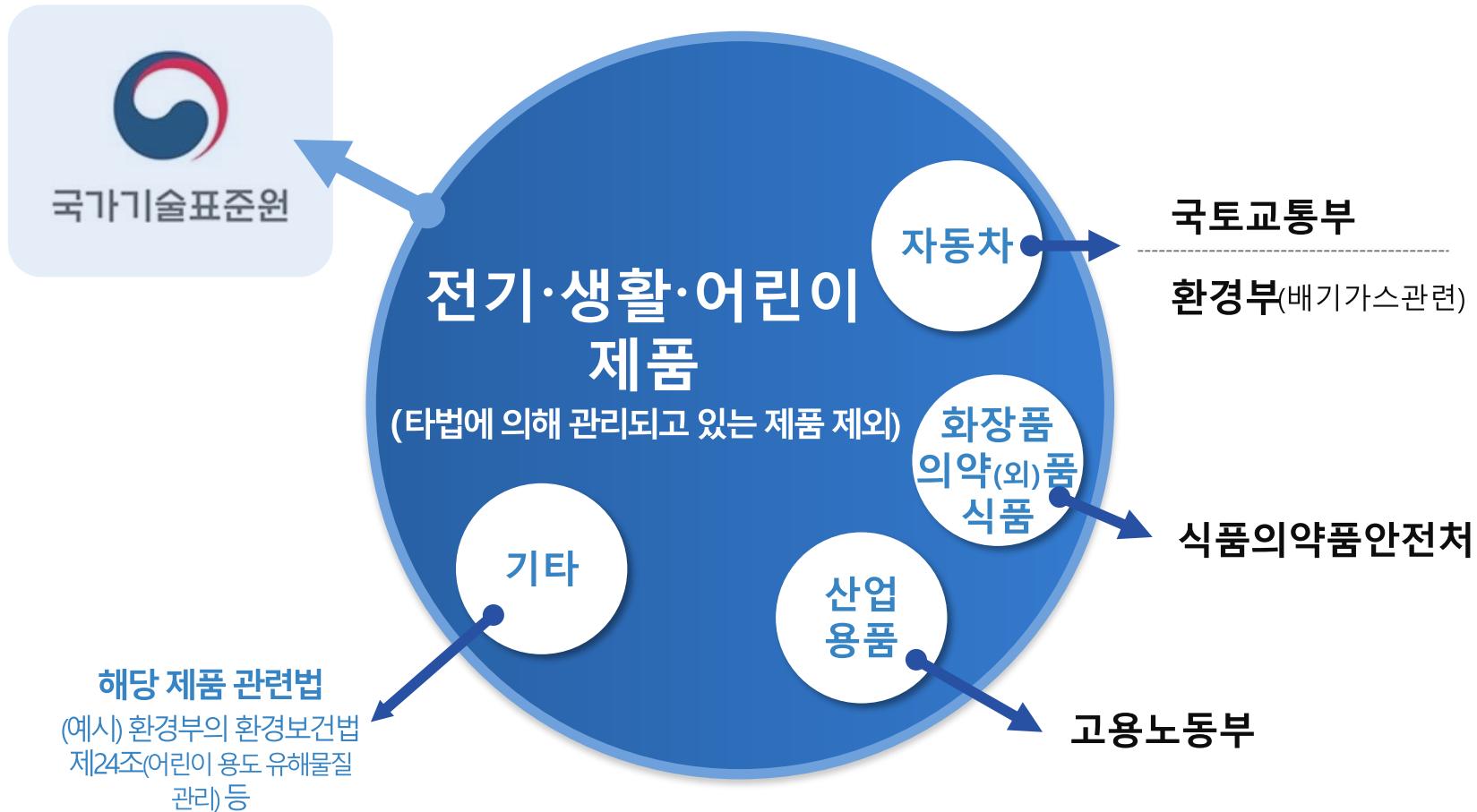
- WTO 및 FTA TBT(무역기술장벽) 협상 및 협정이행 대표창구
-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다자(WTO),
양자협상을 통해 수출 기업부담 완화
- 합리적 기술규제 운용을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및
법정인증·인정제도 개선 추진



FTA

I

제품안전 관리제도 개요



출시 전: 인증제도 운영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생활용품



전기용품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출시 후 : 위해제품 시장감시

- 제품안전기본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
조사



불법제품
신고접수

위해제품
리콜

고발(사법기관),
과태료 부과
및 제품 회수 통보
(지자체)

6개
소비자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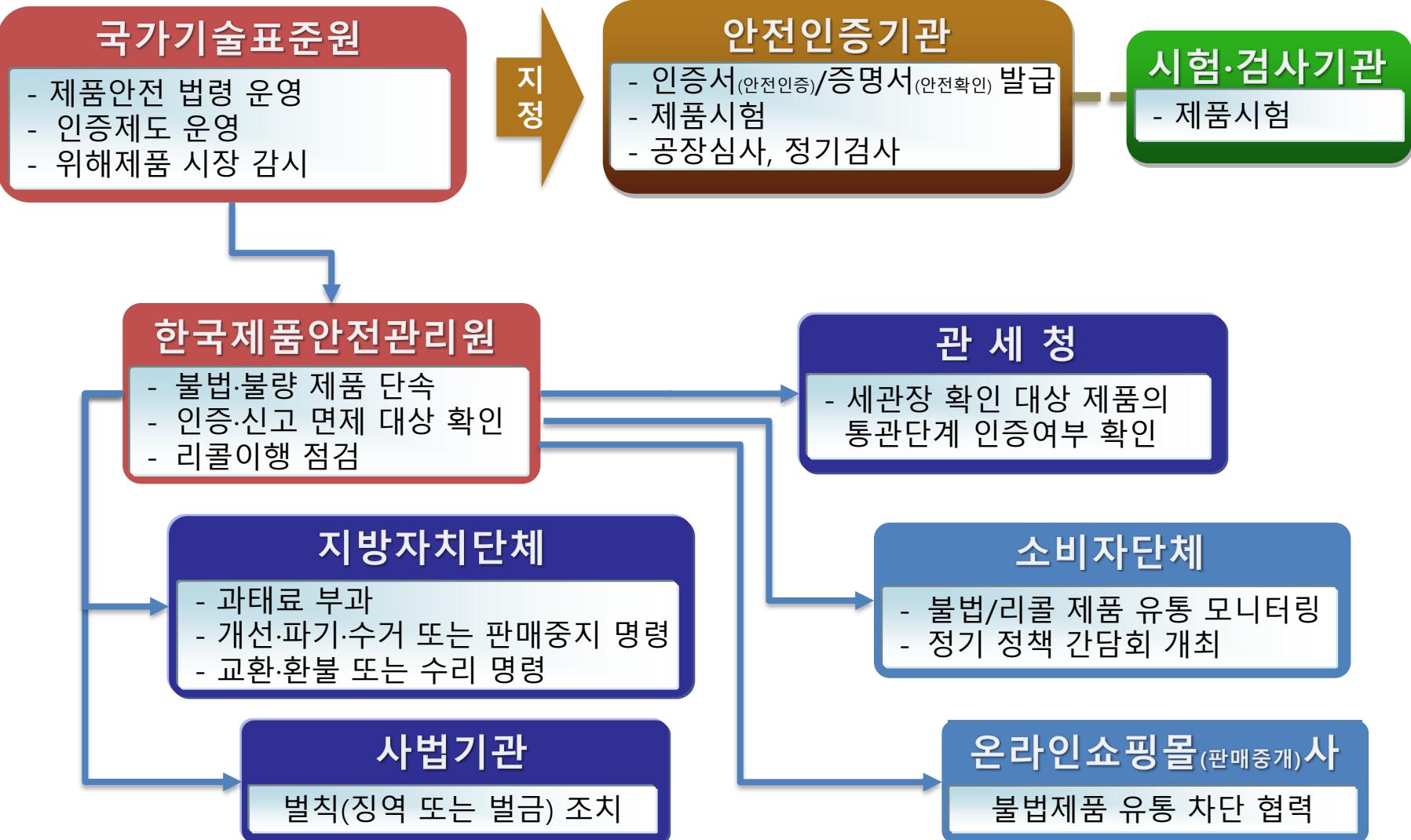
온/오프
라인
유통시장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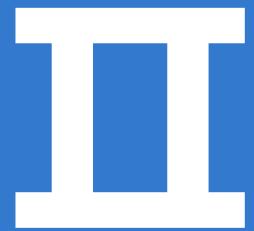
계도
다만, 반복·의도적
위해제품
유통사업자는 신고
민간 자발적인 제품관리
분위기 조성

규제
대상

- 제조(생산 · 조립 · 가공)업자
* 외국에서 제조,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자 포함
- 수입업자

- 제조(생산 · 조립 · 가공)업자
- 유통(수입 · 판매 · 대여)업자
- 영업에 사용하는 업자





제품출시 前 안전관리

인증제도 —

✓ 적용 제품 위해여부

- 전기 178개 품목
- 생활 72개 품목
- 어린이 34개 품목 +α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부분품·부속품

✓ 적용 시점 KC인증표시 시기가 국내제품은 제품 출고 전, 수입제품은 통관 전

- 국내 제조 제품 – 공장 출고전
- 해외 수입 제품 – 세관 통관전

✓ 구매대행 특례

- 일부 안전인증(전기·생활)/ 안전확인(전기)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KC인증표시
없어도 구매대행 가능

✓ 인증종류 위해정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 안전기준준수-생활
- 안전성검사-전기 (23.10월 신설)

✓ 인증 받는 주체

- 제조(생산 · 조립 · 가공)업자
- 수입업자

✓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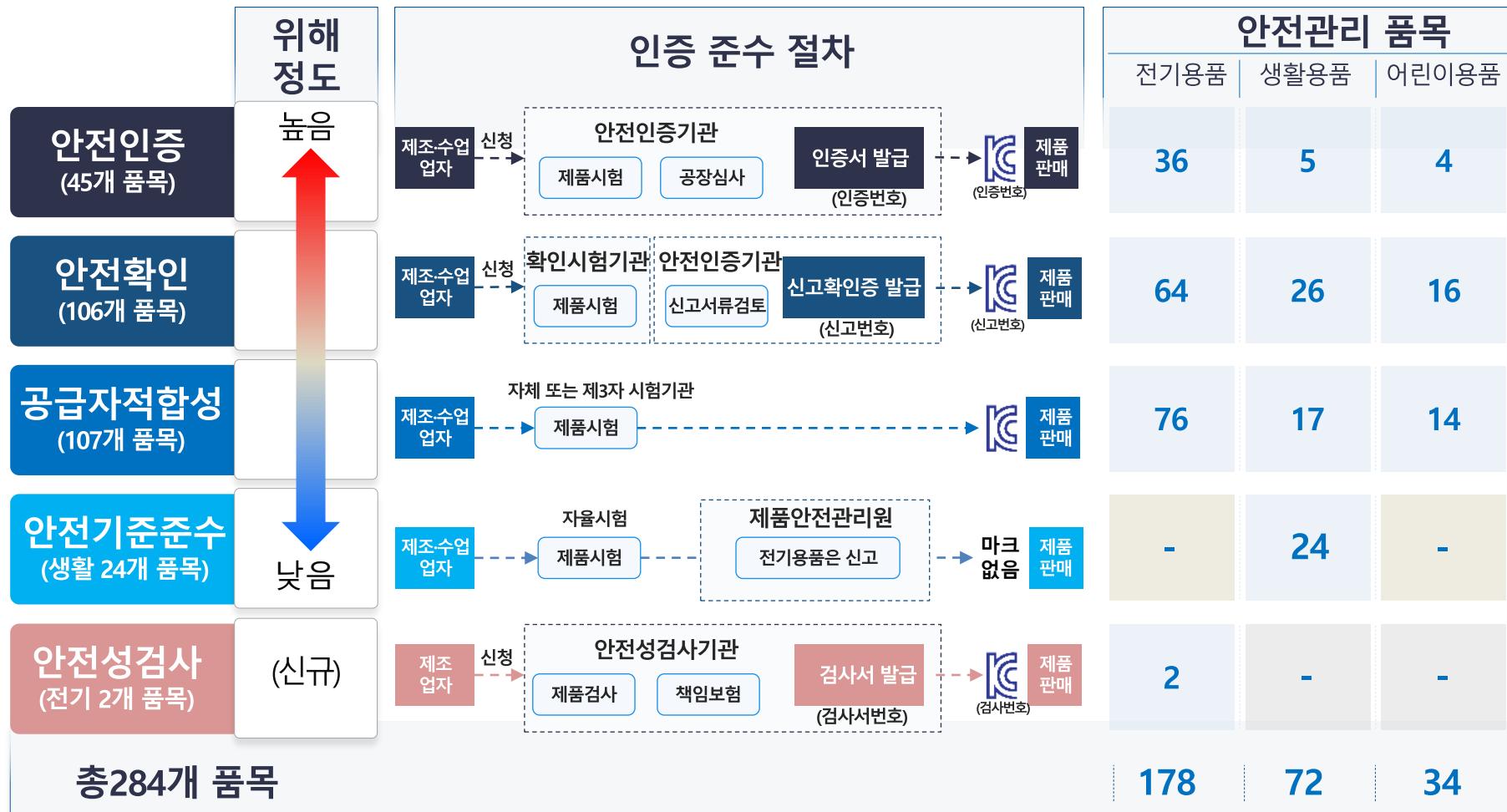
- 연구개발, 전시회·박람회용,
수출용, 인증인정(KS인증 등) 등

✓ 특별히 안전관리 필요한 제품의 경우, 부처간 협력·조정

목차

1. 인증제도
2. 안전기준/시험인증기관
3. 면제/특례
4. 표시사항/인터넷사이트 정보게시
5. 사각지대 제품 관리

인증 종류(수준), 절차 및 품목 현황('23.10월 기준)



* 참고 : 지정현황 URL : [안전인증\(전기, 생활 및 어린이\)](#), [안전확인\(전기, 생활 및 어린이\)](#), [공급자격합성확인\(전기, 생활 및 어린이\)](#), [안전기준준수\(생활\)](#) [안전성검사\(전기\)](#)

안전기준 준수 - 생활용품

- 사고 또는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제품 (전안법 제2조 제13호)
- 업체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하며, 서류 구비, KC 마크 표시 등의 의무는 없으나,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은 표시하여야 함

분야	대상 품목
화학(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죽제품 • 합성수지제품
생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캐비닛 제외) • 간이 빨래걸이 • 선글라스 안경테 • 텐트 • 고령자용 신발 • 고령자용 지팡이 •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고령자용 목욕의자 •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 스테인레스 수세미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매트리스 • 우산 및 양산 • 휴대용 경보기 • 접촉성 금속장신구 • 벽지 및 종이장판지 • 감열지
섬유(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용 섬유제품 • 양탄자

어린이제품 정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정의)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 어린이제품 결정 요소
 - ✓ 제조업체의 설명, 제품광고 및 포장 (제품의 표시사항)
 - ✓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여부
 - ✓ 사용연령에 적합한 제품의 기능 및 특성(크기, 색상, 캐릭터 등)
 - ✓ 기타요소(판매장소, 제품가격, 물리적인 상호작용 여부 등)

어린이제품 결정 체크리스트(1/2)(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1단계 – 결정요소를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1.1 기능 및 특성	1.1.1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2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3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4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5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을 사용하였습니까?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6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위한 기능이 있습니까?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제품의 사용연령	1.2.1 어린이의 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사용에 따른 사용그룹을 판단했을 시 적정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 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제품 광고 및 포장	1.3.1 포장의 문구, 그림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2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3 홍보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대상이 어린이 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4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를 사용했습니까? (예 : 어린이 채널, 어린이제품 판매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소비자의 일반적 인식	1.4.1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small>☞ 아래 자료가 있을 경우 체크</small>)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판매자료 <input type="checkbox"/> 시장분석 자료 <input type="checkbox"/> 마케팅 자료 <input type="checkbox"/> 연령 그룹 자료	
1.5 제조 업체의 설명	1.5.1 표시라벨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예 : 사용연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5.2 사용 설명서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5.3 조립 매뉴얼 등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6 기타 요소	1.6.1 동일 제품군 대비 다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6.2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 입니까? (예 : 어린이 집, 가정 내 어린이 방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어린이제품 고려 여부 확인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어린이제품으로 고려 될 수 있으며, 2단계를 실시한다.	

어린이제품 결정 체크리스트(2/2)(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2단계 - 어린이제품 정의 및 범위에 해당 여부를 통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결정한다.

2.1 주대상 확인	2.1.1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주대상으로 설계 되었습니까? (최소 사용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제품(예 : 8세 이상~성인 등) 포함 됨)	<input type="checkbox"/> 예 → (2.3.1진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2.1 진행)
2.2 오용 가능성 확인	2.2.1 어린이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동일한 제품군에 성인제품과 어린이제품이 혼재) 있는 제품 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 (2.2.2 진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3.2 진행)
	2.2.2 어린이제품이 아님에 대한 표시가("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 가능"등)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 (2.2.3 진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1 진행)
	2.2.3 어린이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장소에(예 : 완구 상점, 대형 쇼핑센터의 어린이제품 판매 구역 등) 유통을 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 (2.3.1 진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3.2진행)
2.3 상호접촉 여부 확인	2.3.1 정상사용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접촉을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 (3.1 진행)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3.2 진행)



어린이제품 결정

3.1 어린이제품 (결정)

3.2 일반용도 제품

목차

1. 인증제도
 2. 안전기준/시험인증기관
 3. 면제/특례
 4. 표시사항/인터넷사이트 정보게시
 5. 사각지대 제품 관리
-

품목별 안전기준 - 현황

품 목	관련 고시 사항	비고
전기용품 (국표원 고시)	<p><u>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제63조(안전기준의 적용)</u> ①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번호와 기준명은 별표 25와 같다.</p>	<p>품목별 안전기준이 별도 고시</p> <p>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번호·기준명 검색</p>
생활용품 (국표원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u> • <u>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u> • <u>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u> • <u>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u> 	<p>인증종류별 품목안전기준이 함께 고시</p> <p>고시문의 부속서 형태</p>
어린이제품 (산업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u> • <u>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u> • <u>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u> • <u>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u> 	<p>인증종류별 품목안전기준이 함께 고시</p> <p>고시문의 부속서 형태</p>

시험인증기관 - 전기용품

▪ 안전인증기관(3개)

기관명	설립일 / 소재지	인증 품목 현황	설립근거(기관성격)
K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66.04 / 경남	전품목(103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1조(정부출연)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0.07 / 과천	102개 품목[커피시터 분야 제외]	민법 제32조(재단법인)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0.07 / 군포	전품목(103개)	민법 제32조(재단법인)

▪ 안전확인 시험기관(18개)

No	시험기관명	지정범위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인증, 안전확인 전품목(101 품목)
2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인증, 안전확인 전품목(100 품목)
3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안전인증, 안전확인 전품목(100 품목)
4	(주)원텍	TV, 모니터 등 33품목
5	(주)디티앤씨	TV, 모니터 등 36품목
6	(주)씨티케이	TV, 모니터 등 18품목
7	(주)유씨에스	TV, 모니터 등 17품목
8	(주)코스텍	TV, 모니터 등 13품목
9	(주)에이치시티	전지, 모니터 등 12품목
10	(주)유로핀즈케이씨티엘	TV, 모니터 등 18품목
11	(재)한국조명ICT연구원	TV, 모니터, 백열등기구 등 20품목
12	(재)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이미용기기, 전지, 백열등기구 등 8품목
13	(주)에스테크	모니터 등 7품목
14	(주)케이아이에스	TV, 모니터 등 12품목
15	(주)엔씨티	전지, 모니터 등 6품목
16	(주)랩티	TV, 모니터 등 15품목
17	(주)스탠다드 뱅크	이미용기기, TV, 모니터 등 36품목
18	(주)한국에스지에스	전지 1품목

2 시험인증기관 - 생활용품

▪ 안전인증기관(6개)

기관명	설립일 / 소재지	인증 품목 현황			설립근거(기관성격)
		인증	확인	계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0.07 / 서울	3	4	7	민법 제32조(재단법인)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0.07 / 군포	2	16	18	민법 제32조(재단법인)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0.07 / 서울	3	18	21	민법 제32조(재단법인)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965.04 / 서울	4	3	7	민법 제32조(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	1965.03 / 서울	2	7	9	민법 제32조(재단법인)
KOTITI시험연구원	1961.09 / 성남	4	0	4	민법 제32조(사단법인)

▪ 안전확인 시험기관(8개)

No	기관명	지정 품목	개수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휴대용예초기날 및 보호덮개,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운동용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승차용안전모, 스노보드, 스키용구, 룰러스포츠보호장구, 고령자용보행차, 미끄럼방지타일, 전동보드, 스포츠용구명복, 야외 운동기구	18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건전지, 자동차용타이어, 가정용 미용기기, 실내용바닥재	4
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전지, 실내용 바닥재, 자동차용브레이크액, 휴대용예초기날및보호덮개, 고령자용보행보조차, 디지털도어록,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운동용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수유패드, 전동보드, 야외 운동기구, 가정용 미용기기	16
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산용 로프, 온열팩, 수유패드	3
5	MS시험연구원	등산용로프,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수유패드, 스노보드, 스키용구, 스포츠용구명복, 야외 운동기구	8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휴대용레이저용품, 가정용 미용기기	2
7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기름난로	1
8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용 타이어	1

시험인증기관 –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기관(6개)

기관명	설립일 / 소재지	인증 품목 현황			설립근거(기관성격)
		인증	확인	계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0.07 / 서울	3	12	15	민법 제32조(재단법인)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0.07 / 군포	2	11	13	민법 제32조(재단법인)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10.07 / 서울	4	16	20	민법 제32조(재단법인)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965.04 / 서울	2	8	10	민법 제32조(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	1965.03 / 서울	2	8	10	민법 제32조(재단법인)
KOTITI시험연구원	1961.09 / 성남	2	11	13	민법 제32조(사단법인)

▪ 안전확인 시험기관(7개)

No	기관명	지정 품목	개수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보행기,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모차,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학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18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온열팩,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학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캐리어, 보행기, 유모차,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4
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보행기, 유모차,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유아용 침대,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16
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보행기, 유모차,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유아용 침대,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온열팩	3
5	FITI 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보행기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8
6	KOTITI시험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이단침대, 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	2
7	한국에스지에스(주)	학용품, 완구	1

목차

1. 인증제도
 2. 안전기준/시험인증기관
 3. 면제/특례
 4. 표시사항/인터넷사이트 정보게시
 5. 사각지대 제품 관리
-

법적 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연구·개발 용도

-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방송법, 전파법)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 용도 (판매목적 불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수입 제품

-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専用)의 것
- 수출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해 반출조건으로 반입되는 것 포함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용도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해당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

병행수입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의료기기법」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대여 않는 것(고시)

일회성 수입, 생산(안전인증)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타이어(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16]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대외 무역 관리규정 제59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산업용(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5.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법정의무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9.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관리원장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등 면제대상 – 어린이

법적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항,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제8항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시험·검사기관이 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 **안전인증 전부 면제**
-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 **공장심사 면제**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장심사 면제**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KC마크가 없는

일부 전기·생활 제품은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이 불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상세품목](#)

<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

품목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전기용품	23품목 허용(고시) (전체 36품목)	48품목 허용(고시) (전체 64품목)	전체 76품목 허용 (구매대행 비규제)	-
생활용품	2품목 허용(고시) (전체 5품목)	전체 품목 허용 (전체 26품목)	전체 17품목 허용 (구매대행 비규제)	전체 24품목 허용 (구매대행 비규제)

다만, 구매대행 할 경우, 3가지 고지의무 준수(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KC인증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대행이 금지

해외제품 구매의 유형 – 직접구매(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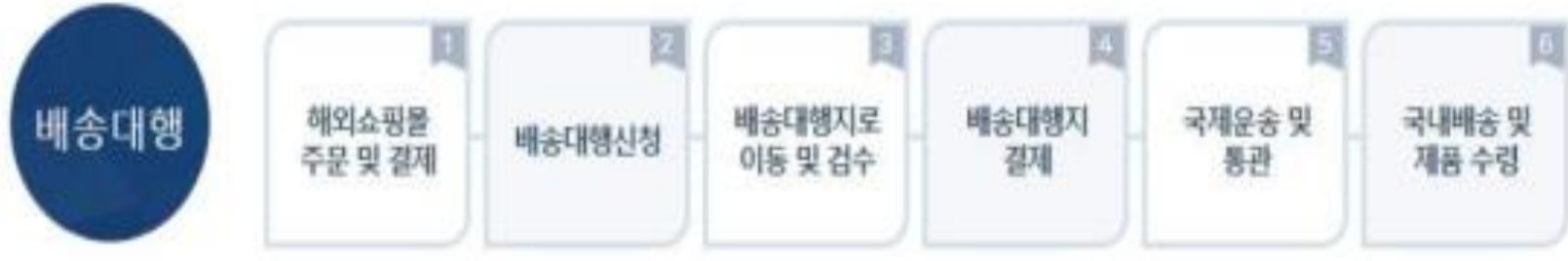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쇼핑몰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방식

- * [중국] 알리익스프레스·타오바오닷컴(알리바바), [미국] 아마존·이베이·아이허브,
[일본] 아마존재팬·라쿠텐, [싱가포르] Qoo10 등

‘직구’,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이 혼용!

해외제품 구매의 유형 – 배송대행



구매자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대행 업체에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해외의 배송대행지(배대지)에 입고 시키면, 배송대행 업체가 국제 운송·통관절차 등을 거쳐 국내 수령지로 배송해 주는 방식

해외제품 구매의 유형 – 구매대행



구매자의 의뢰에 따라 대행업체가 해외에서 구매 및 배송을 대행

- ① (위 임 형) 주로 구매절차가 **까다로운** 자동차, 미술품 등 특정물품의 구매를 일괄 위임받아 구매·배송대행 하는 방식
- ② (쇼핑몰형) 해외 물품을 **국내 쇼핑몰**에 게시하고 주문이 접수되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배송대행 하는 방식

(참고) 국세청 구매대행 업종 요건

- 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의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 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참고)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정의)

- 16.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하도록 하는 방식의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1. 인증제도
 2. 안전기준/시험인증기관
 3. 면제/특례
 4. 표시사항/인터넷사이트 정보게시
 5. 사각지대 제품 관리
-

표시사항 규정 – 전기용품

구분	① 인증마크·번호	② 기타필요한 표시	③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항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항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제1항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항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제1항 <u>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별표 9]</u>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제59조(표시방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57 조 (안전 인증 등의 표시) <u>기타필요한 표시 [별표 23]</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7조(안전인증등의 표시) 제63조(안전기준의 적용) <u>품목별 안전기준 현황 [별표 25]</u>

표시사항 규정 – 생활용품

구분	① 인증마크·번호	②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항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항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항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제1항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1항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제1항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1항 <p><u>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별표 9]</u></p>	
고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4항</u> <u>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조제4항</u> <u>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조제4항</u> <u>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제4항</u>

1 표시사항 규정 – 어린이제품

구분	① 인증마크·번호	②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 (제품에 관한 정보)	③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항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1항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항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2항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5항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5항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5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및 [별표 7]제39조(안전확인표시) 및 [별표 11]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및 [별표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제39조(안전확인표시),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및 [별표 8]
고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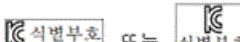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

II. 일반원칙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정보는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 예시 >

1) KC 인증을 필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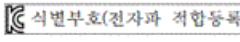
또는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이때 소비자의 인증정보 진위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 소관부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24)가 제공하는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URL)를 추가적으로 링크하는 방안을 권장함

2) KC 인증을 필했으나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또는 KC 인증 필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3) 동일 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KC 인증을 필한 경우



, 와 같이 KC 마크 주변에 인증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1)의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URL)를 각각 링크

4) KC 인증이 면제된 경우

‘본 상품은 고객님 요청에 따라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등록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확인이 면제된 품목입니다.’ 등과 같이 면제되는 인증의 종류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목차

1. 인증제도 현황
 2. 안전기준/시험인증기관
 3. 면제/특례
 4. 표시사항/인터넷사이트 정보게시
 5. 제도 사각지대 제품 관리
-

1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소관부처간 조정·협력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범부처 차원의 제품안전 관련 관계부처 협업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설치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 국조실 제2차장, 간사: 제품안전정책국장
위원: 12개 부처* 국장

제품안전분과협의회

위원장 주재, 논의필요 부처간 참여

제품안전실무협의회

위원장: 국표원장, 간사: 제품안전정책과장, 위원: 12개 부처 과장

위험요소평가위원회

12개 부처 추천 소비자·전문가·학계(국표원 구성·운영)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17.3.21. 개정 공포, '17.9.22. 시행)

* 12개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III

제품 출시 後 안전관리

위해제품 시장감시 —

① 불법·불량 의심제품, 제품사고 등
신고·제보 접수 및 위해정보 수집

불법 의심

불량 의심

사고 발생

② 불법제품 조사

안전성 조사

사고 조사

불법제품

위법사업자

위법행위

리콜/인증취소 등

징역·벌금/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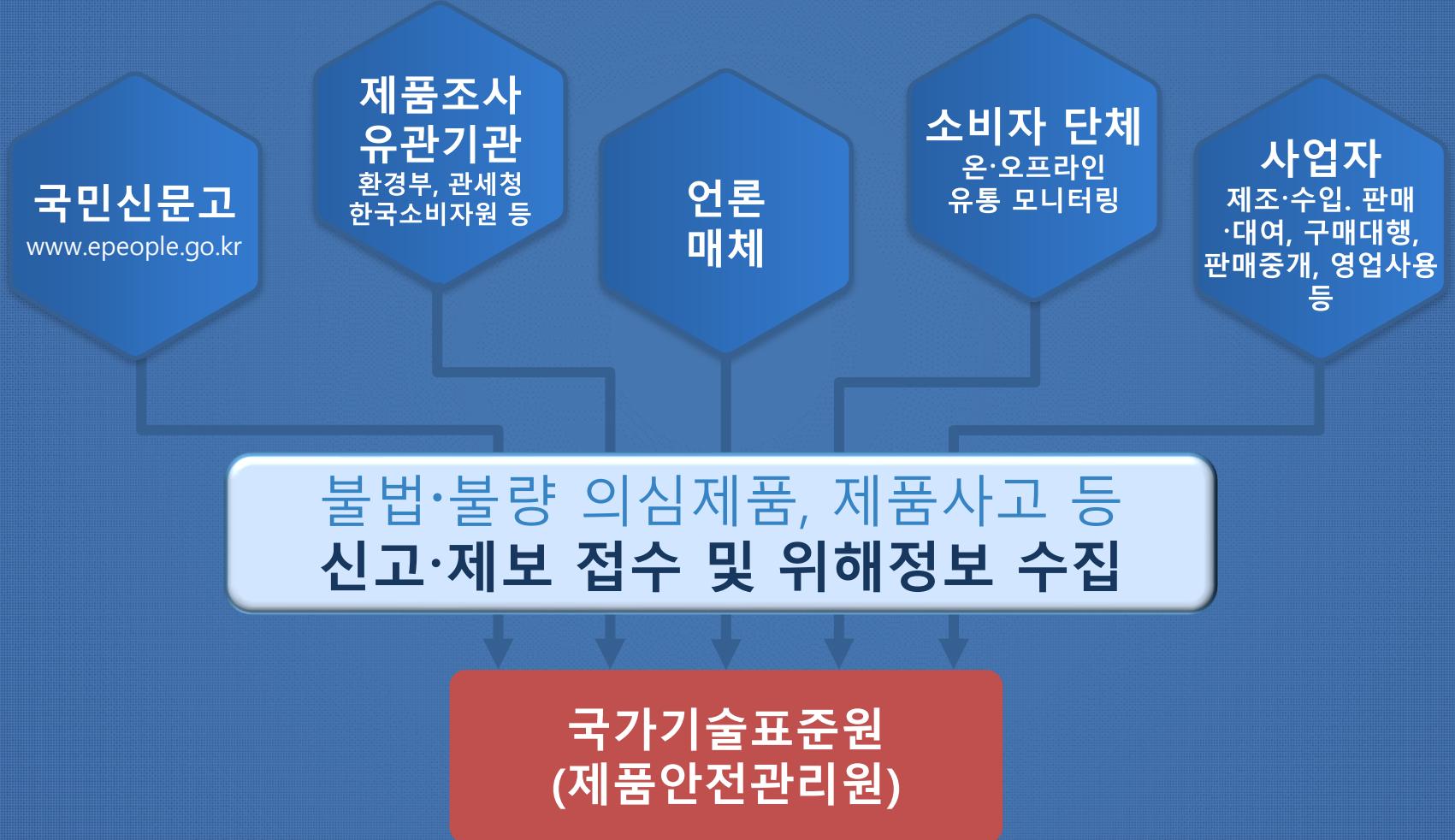
위해사실 공표

④ 소비자단체
상시 모니터링

위해상품차단
시스템 등록

온라인쇼핑몰사
판매차단 협력

① 위해정보 수집 •



② 제품 조사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관리원)

안전기준 등에서 규정된 설계, 구조, 표시 등의 결합으로 위해우려

불량 의심

불법제품 조사

불법의심 제품에 관하여, 서면 보고, 필요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등 검사, 관계인에게 질의 등 실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보고와 검사 등)

제7조
(보고와 검사 등)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제품 결함·특성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

사고 발생

사고 조사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 방지와 위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사고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을 규명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③ 조사별 행정조치

법적 근거



불법제품 조사

제품

- 리콜명령(지자체)
- 인증취소, 인증표시
 사용금지 또는 개선 명령
 (인증기관)

사업자

- 수사의뢰(수사기관) 또는
 벌칙* 부과(사법기관)
 * 벌금 또는 징역
- 과태료 부과(지자체)

불량(안전성) 여부
추가 조사

안전성 조사

제품

- 리콜명령(국표원)
 * 개선조치 권고, 리콜권고, 리콜명령
- 인증취소, 인증표시
 사용금지 또는 개선 명령
 (인증기관)

불법 여부
추가 조사

사고 조사

사고조사 결과 공표

사업자

- 수사의뢰(수사기관) 또는 벌칙
 부과(사법기관)
 * 사고보고, 자진수거 등 불이행 경우
- 과태료 부과(지자체)
 * 사고조사, 결과보고 등 불이행 경우

불법/불량(안전성) 여부
추가 조사

④ 사후관리

불법제품 조사

온라인쇼핑몰(판매중개) 판매차단

- * 온라인 유통 불법제품 중, ▲
온라인상 인증정보
미게재(어린이제품에 한해, 제품에는
인증정보 표시) ▲사업장 소재지가
해외 또는 확인불가
- ▲인터넷사이트에 상품정보는 있으나
수입·판매 사실 없음 ▲사전 주문
제조·수입 등의 경우

리콜 이행점검(지자체·관리원)

안전성 조사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등록

- * 온/오프라인 유통사에 리콜정보 제공

리콜제품 유통상시 모니터링(소비자단체)

사고 조사

리콜 이행점검(관리원)

사업자

- 벌칙 부과 * 자진수거, 보완명령 등 불이행
- 과태료 부과 * 리콜이행 계획 거짓 등

불법-불량

■ 불법제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제품

- ① 안전관리대상 품목임에도 불구, 안전인증/안전확인을 받지 않거나 공급자적합성 확인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를 갖추지 않은 제품
- ② 인증 등을 받은 후에, 부품 등을 신고없이 무단변경한 제품* 등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무단 변경시 불법제품으로 간주

■ 불량제품: 설계·구조·표시 등의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 ① 안전인증/안전확인을 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빙서류를 갖추었으나, 유해 화학물질 함량, 기능, 성능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 ② 인증 등을 받은 후에, 제조년월 등의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

구분	불법제품	불량제품
전기용품	온도과승방지장치, 퓨즈 등을 무단변경한 전기찜질기	표면온도 기준치를 35°C 초과하여 화상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유아용 섬유제품	내구성 미달(부품 파손)로 사용 중 상해 우려가 있는 유모차

목차

1. 불법제품 조사
2. 안전성 조사/리콜제도
3. 사고조사
4. 리콜이행점검
5. 사후관리(이해관계자 협력)

불법제품 조사 체계

국민신문고,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등으로 신고·적발된

불법의심 제품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 실시



2 불법제품 행정조치



행정조치	주요 내용	관련근거
형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위반 행위자 : 벌금 또는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확정될 경우, 관련 불법제품은 지자체에서 리콜명령 실시 * 위반행위가 명백하나 조사가 어려울 경우, 수사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안전기본법」제26조(벌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9조(벌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41조(벌칙)
지자체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위반 행위자: 과태료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1조(과태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43조(과태료)
인증기관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위반 제품 : 리콜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 · 파기 · 수거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4조(판매중지등의명령 등)
판매중지 요청	<p>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불법제품에 대한 제한적*으로 온라인쇼핑몰(판매중개) 등을 통해 판매차단 실시</p> <p>* ▲사업장 소재지가 해외 또는 확인불가 ▲인터넷사이트에 상품정보는 있으나 수입·판매 사실 없음 ▲사전 주문 시 제조·수입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제2항,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제2항,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판매·사용 등의 금지)제2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중개 및 구매 · 수입대행의금지)

3년간 불법·불량제품 단속 주요 품목

순위	2020		2021		2022		2023.6월	
	품목	적발수	품목	적발수	품목	적발수	품목	적발수
1	완구	1,919 (37.7)	완구	2,950 (39.1)	완구	1,681 (45.0)	완구	842 (42.8)
2	유아용 섬유제품	982 (19.3)	유아용 섬유제품	622 (8.2)	유아용 섬유제품	305 (8.2)	전지	131 (6.7)
3	전지	469 (9.2)	전지	615 (8.2)	아동용 섬유제품	255 (6.8)	아동용 섬유제품	127 (6.5)
4	아동용 섬유제품	436 (8.6)	아동용 섬유제품	569 (7.5)	기타 어린이제품	201 (5.4)	기타 어린이제품	121 (6.1)
5	기타 어린이제품	242 (4.8)	기타 어린이제품	417 (5.5)	전지	155 (4.1)	어린이용 가구	113 (5.7)
6	일반 조명기구	60 (1.2)	헬스기구	337 (4.5)	플러그 및 콘센트	133 (3.6)	유아용 섬유제품	104 (5.3)
7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8 (1.1)	전기헬스기구	223 (3.0)	전기헬스기구	83 (2.2)	건전지	57 (2.9)
8	가정용 섬유제품	56 (1.1)	유모차	170 (2.3)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68 (1.8)	전기설비용부속 품및연결부품	46 (2.3)
9	유모차	56 (1.1)	어린이용 놀이기구	126 (1.7)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55 (1.5)	휴대용 레이저용품	31 (1.6)
10	유아용의자	37 (0.7)	일반조명기구	84 (1.1)	학용품	53 (1.4)	헬스기구	29 (1.5)
기타	-	775 (15.2)	-	1,429 (18.9)	-	749 (20.0)	-	367 (18.6)
계		5,090 (100)		7,542 (100)		3,738 (100)		1,968 (100)

3 통관단계 위해 수입제품 차단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국표원(제품안전관리원)이 협업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수입차단 및

해외 리콜(소비자주의) 제품의 국내 유통을 모니터링



목차

1. 불법제품 조사
 2. 안전성 조사/리콜제도
 3. 사고조사
 4. 리콜이행점검
 5. 사후관리(이해관계자 협력)
-

안전성조사 – 개요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불량)를

시험, 검사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일 경우 **리콜명령** 등 조치

시중유통 제품 샘플링

시중유통 제품 샘플링

시중유통(온·오프라인) 제품 대상 안전성조사 시료 구입

시험, 검사

위해성 여부 확인

안전성조사 기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안전기준 적합여부 시험·검사

부적합제품 행정조치

리콜명령, 리콜권고, 개선조치 권고 등

부적합 제품 사업자 처분사전통지 / 청문회 → 행정처분
※ 리콜명령 제품은 언론공표 대상

리콜이행점검

이행점검

사업자가 제출한 리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 승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거 실적과 증빙자료 등 점검
미이행, 불성실업체는 고발, 과태료 및 보완명령 등 실시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법적 근거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결과	행정처분	사업자 의무
최중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 판매(바코드) 차단 언론 공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고서 제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품 수거·교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리콜이행점검 준비
중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거등의 권고(리콜권고) 판매(바코드) 차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고서 제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품 수거·교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리콜이행점검 준비
경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조치 권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고서 제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적합 내용 개선

■ 결합수준 결정 기준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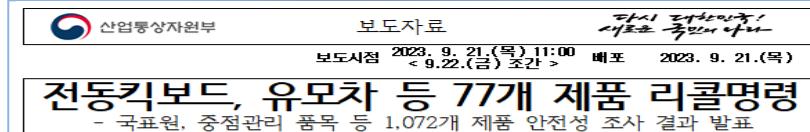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안전성조사 – 결과발표

안전성조사 결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하고,

리콜제품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해 별도 공개

보도자료 배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 관리 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 조치 등)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의 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하였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소비자의 안전성 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9개) 등 어린이 제품 3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하였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등록하였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장 최현기 (043-870-5420)
		담당자	연구관 박준영 (043-870-5427)

리콜제품 언론공개



리콜제품 언론보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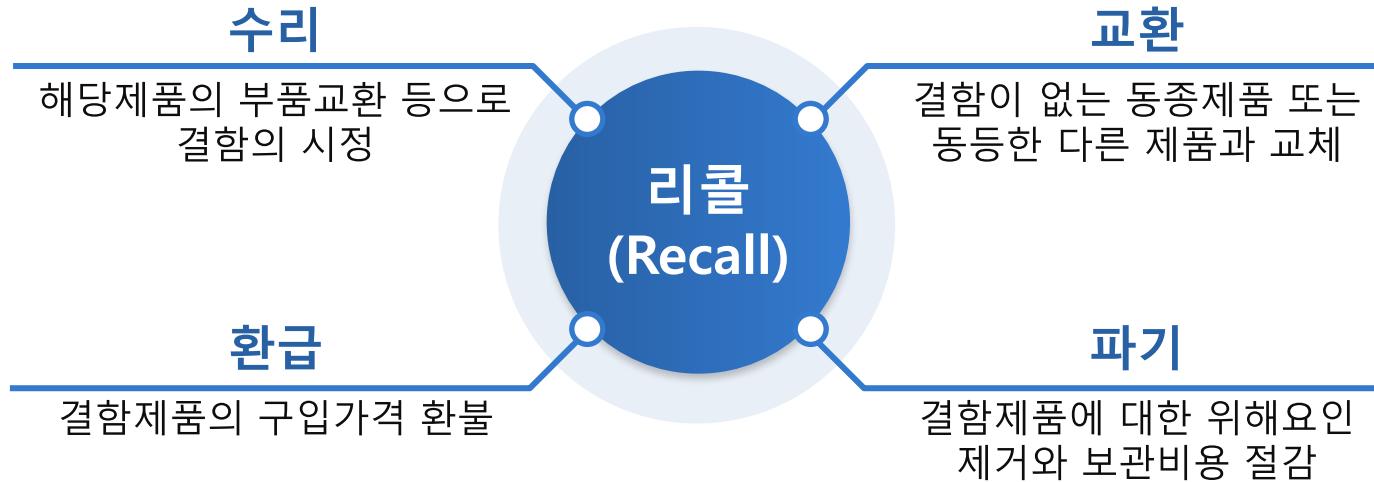
생활용품(전동킥보드)



어린이제품(액체괴물)



제품의 결함으로 신체,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수리**, **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



자발적 리콜

-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 등을 발견하고 **스스로** 리콜 절차 개시

강제적 리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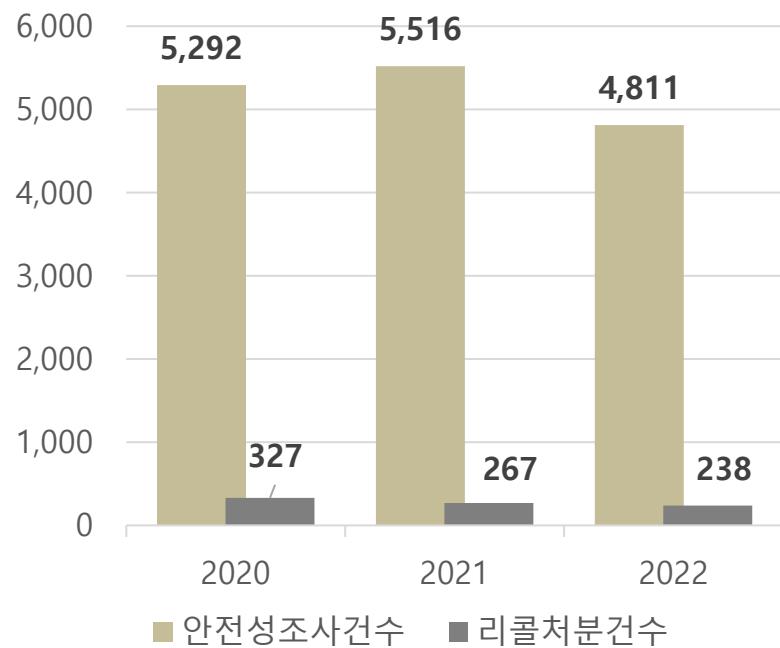
- **안전성조사**로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명령**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리콜 절차 개시

3년간 안전성조사 및 리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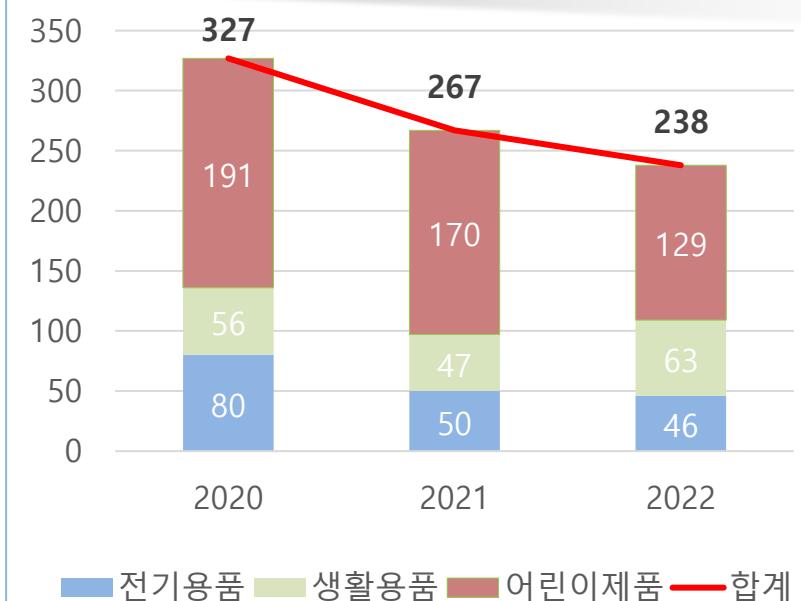
시장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조사 지속 추진

사업자들의 제품안전 의식고취 등으로
리콜 건수는 최근 감소 추세

안전성조사



리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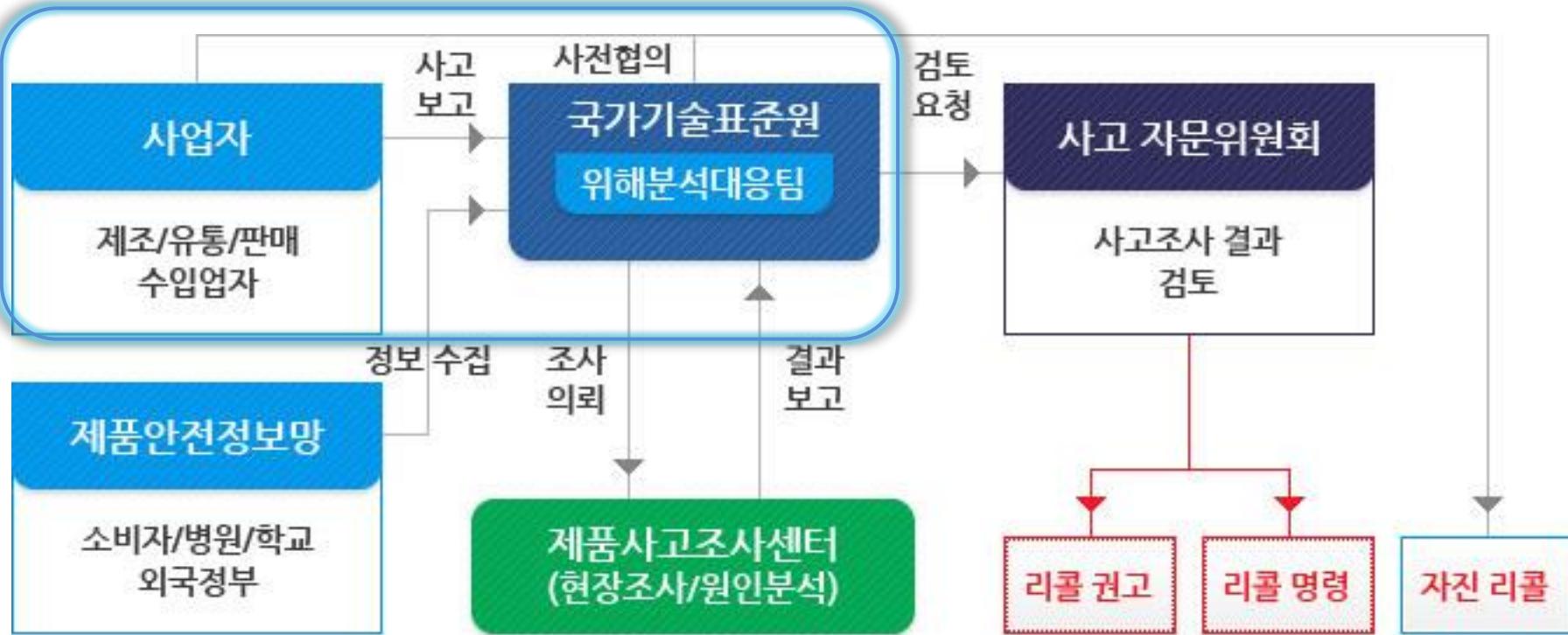
리콜상위 품목현황 * 자발적 리콜 포함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품목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건수(%)
1	완구	79	완구	57	완구	44	완구	12
	어린이제품	(21.2)	어린이제품	(17.3)	어린이제품	(16.7)	어린이제품	(10.3)
2	아동용 섬유제품	55	아동용 섬유제품	37	아동용 섬유제품	32	어린이용 가죽제품	10
	어린이제품	(14.7)	어린이제품	(11.2)	어린이제품	(12.1)	어린이제품	(8.5)
3	일반조명기구	19	일반조명 기구	20	속눈썹 열 성형기	14	아동용 섬유제품	9
	전기용품	(5.1)	전기용품	(6.1)	생활용품	(5.3)	어린이제품	(7.7)
4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6	학용품	18	가구(높이 762mm 이상)	11	가구(높이 762mm 이상)	7
	전기용품	(4.3)	어린이제품	(5.5)	생활용품	(4.2)	생활용품	(6.0)
5	어린이 줄넘기	15	어린이용 가죽용품	18	유아용 섬유제품	11	전지	5
	어린이제품	(4.0)	어린이제품	(5.5)	어린이제품	(4.2)	전기용품	(4.3)
6	직류전원장치	15	전지	17	전기방석	9	어린이용 장신구	5
	전기용품	(4.0)	전기용품	(5.2)	전기용품	(3.4)	어린이제품	(4.3)
7	학용품	9	유아용 섬유제품	14	플러그 및 콘센트	8	어린이용 자전거	5
	어린이제품	(2.4)	어린이제품	(4.3)	전기용품	(3.0)	어린이제품	(4.3)
8	가정용 섬유제품	9	(교류)전기찜질기, 발보온기	10	LED 등기구	7	어린이용 안경테	5
	생활용품	(2.4)	전기용품	(3.0)	전기용품	(2.7)	어린이제품	(4.3)
9	가구 (높이 762mm이상)	9	가구(높이 762mm이상)	10	어린이용 자전거	7	기타 어린이제품	4
	생활용품	(2.4)	생활용품	(3.0)	어린이제품	(2.7)	어린이제품	(3.4)
10	어린이용 장신구	8	어린이용 안경테	9	합성수지제 어린이제 품	7	기타 생활용품	4
	어린이제품	(2.1)	어린이제품	(2.7)	어린이제품	(2.7)	생활용품	(3.4)
-	기타	139 (37.3)	기타	119 (36.2)	기타	113 (43.0)	기타	51 (43.6)
합계	373	100.0	329	100.0	263	100.0	117	100

목차

1. 불법제품 조사
2. 안전성 조사/리콜제도
3. 사고조사
4. 리콜이행점검
5. 사후관리(이해관계자 협력)

1 제품사고 조사 추진 체계



용어·개념 정의 (제품안전기본법)

- **(제품)**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제3조제1호)
 - **(소비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 **(제품사고)** 제품의 결함 또는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제15조제1항)
- **(제품사고조사)** 제품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제15조제1항)

사고조사 착수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7. 28. (목)	
담당 부서 <총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이위로 (043-870-5430) 연구관 이보하 (043-870-5333)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제품 사고조사 착수

- 유해물질 관련 시험 등 조사 실시 후, 필요한 안전조치 검토 -

-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에서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에서 품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 ('22.7.28일) 하였다.
-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실시 등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 제품안전기본법 및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 사고관련 산·학·연 전문가(기존 위원) 및 위해물질 등 인체위해 전문가 활용
-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및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한국소비자원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이위로 (043-870-5430) 연구관 이보하 (043-870-533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책임자 담당자	과장 박용민 (043-870-5450) 연구관 김용석 (043-870-5457)

2

자발적 리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자발적 리콜 절차

리콜 계획서 제출

결함제품, 해외리콜제품 등에 대하여 위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www.safetykorea.kr에 사업자정보, 제품정보, 공표문 정보 등을 사업자가 제출

↓
진척상황 보고서 제출

계획서 제출 한달 후 진척상황 보고서 제출

↓
결과 보고서 제출

진척상황 보고서 제출 후 한달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자발적 리콜 현황

2020			2021			2022		
전기	생활	어린이	전기	생활	어린이	전기	생활	어린이
80	56	191	50	47	170	46	63	129
7	4	8	9	9	10	10	4	12

자발적 리콜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다행스러워!
새로운
죽임의 아파

보도시점 2023. 10. 29.(일) 11:00 배포 2023. 10. 27.(금)
< 10.30.(월) 조간 >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화의 환불·교환 실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하여 10.30.(월)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주)아성이 '22.10.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블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3,253켤레)와 (주)바스존이 '22.3.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이다.

< 자발적 리콜 대상 욕실화 >

- . (사업자) (주)아성
- . (모델명) PVC발포 블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 . (리콜사유)
 -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치 초과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 (사업자) (주)바스존
- . (모델명) 애니멀 욕실화
- . (리콜사유)
 -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사업자는 용인VMCA에서 '23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로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사실 확인'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주)아성 02-405-0770, (주)바스존 031-595-4227)에게 연락하여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	책임자	과장	박해범 (043-870-5430)
		담당자	연구사	하다솜 (043-870-5439)

목차

1. 불법제품 조사
2. 안전성 조사/리콜제도
3. 사고조사
4. 리콜이행점검
5. 사후관리(이해관계자 협력)

리콜이행점검

리콜조치 행정처분

-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상품일 경우 리콜조치**
 -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또는 리콜명령 문서 통보(즉시)
 -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즉시)
 - 언론 보도자료 배포(즉시)
- **(관리원) 리콜사업자 리콜이행점검 전담자 지정**

리콜이행

- **(사업자) 리콜이행 계획서 제출** → 국표원(리콜공표 10일 이내)
- **(사업자) 리콜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 국표원(리콜공표 1개월 이내)
 - * 리콜 불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리콜이행 계획서·결과보고서 미제출, 거짓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리콜이행 점검

- **(국표원·관리원) 현장방문 등을 통해 리콜이행 상황 점검**(리콜공표 1개월 이후)

리콜조치 불성실

- **(국표원) 리콜이행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 * 보완명령 불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칙)

리콜제품 사후관리

- **(국표원·관리원) 후속이행점검**
 - 리콜이행 실적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별화하여 추가 점검
 - 리콜제품 유통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 **(소비자단체·관리원) 유통 감시**
- **(온라인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협의체를 통해 등록·판매 중지 협력**

목차

1. 불법제품 조사
 2. 안전성 조사/리콜제도
 3. 사고조사
 4. 리콜이행점검
 5. 사후관리/이해관계자 협력
-

위해제품 유통 소비자모니터링 – 개요

'06년부터 6개 소비자단체들과 협력, 소비자감시원을 통해

시중 유통 중인 불법·리콜 의심제품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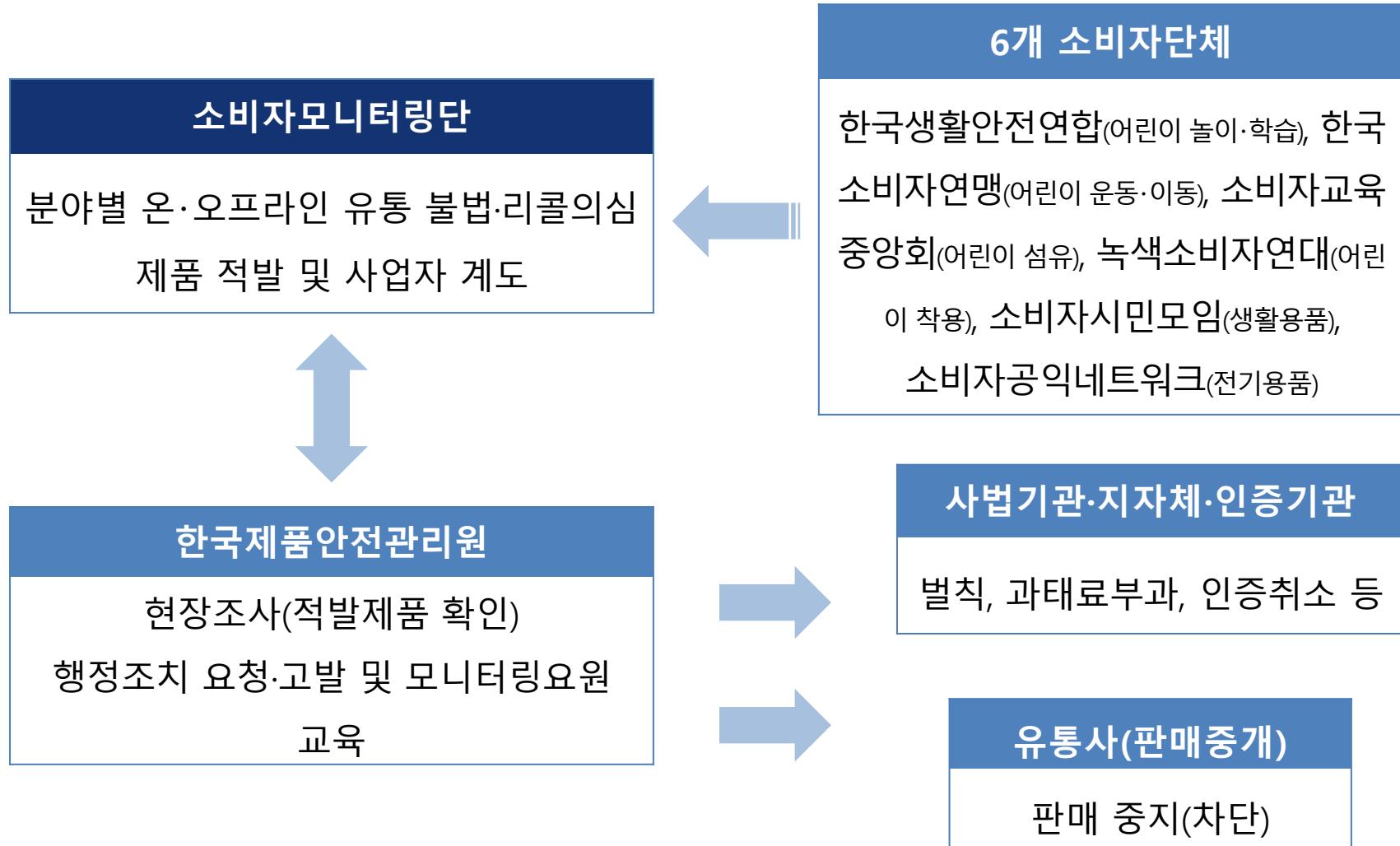
민간 자발적인 제품안전 관리 분위기를 조성

- 위촉된 **모니터링 요원**이 전국의 **오프라인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탐색** 등을 통해 **제품 모니터링 실시**
(온라인 감시영역) ▲종합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품목별전문몰 ▲구매대행·해외직구
(오프라인 감시영역) ▲대형마트 ▲전문매장·백화점 ▲유통단지·문구점·재래시장
- **불법(KC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미비 등)** 및 **리콜제품**을 **모니터링**하여 **적발시 관리원에 통보**하고, 현장 **시정권고와 계도 활동**도 병행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을 통한 **제품안전 의식 제고**

사업자들의 제품안전 관리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위해제품 유통 소비자모니터링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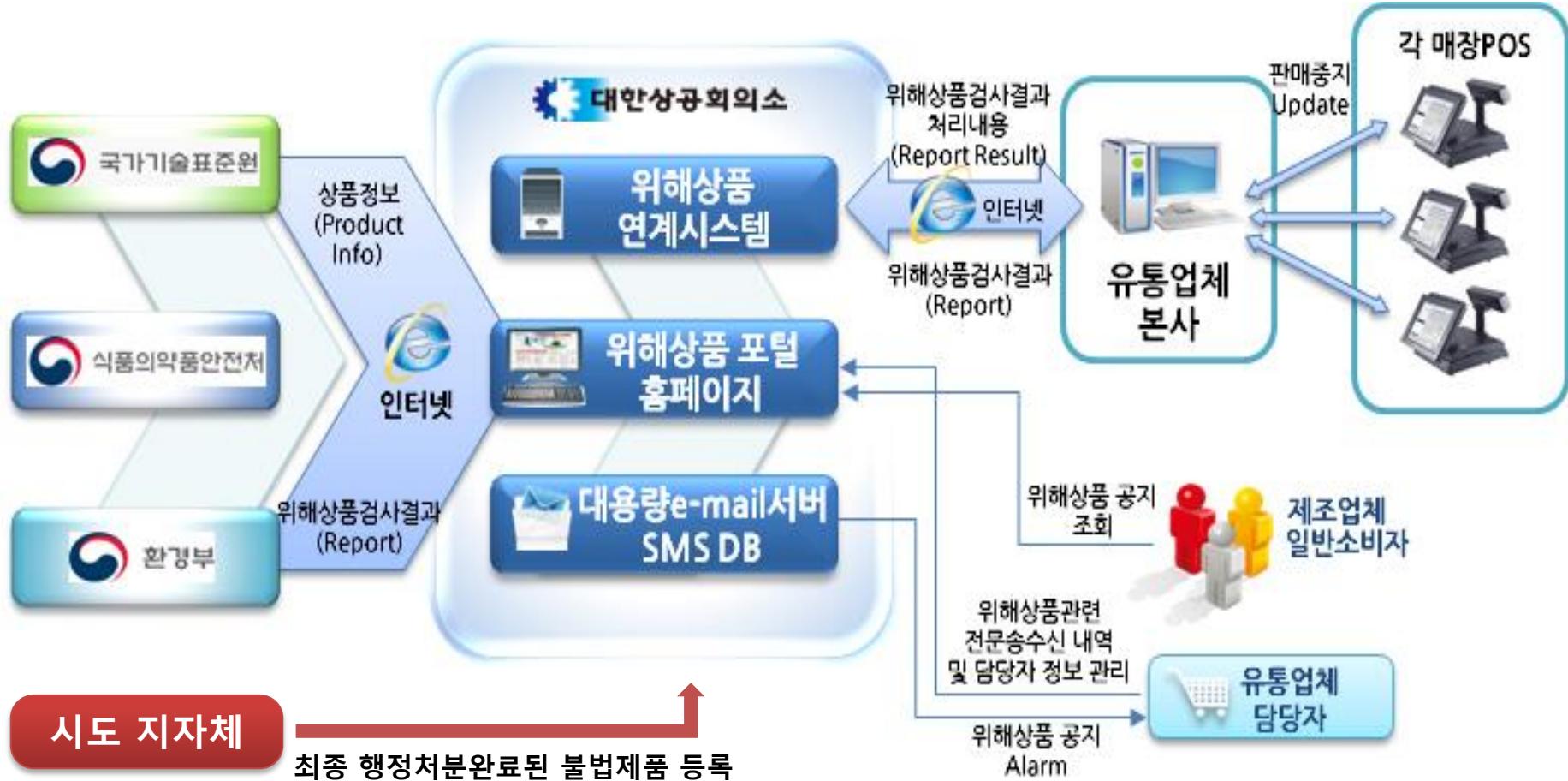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리콜, 불법 등 위해제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연계된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을 원천 차단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 체계



- '08년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 등을 계기로 '09년부터 산업부(유통물류과)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운영 시작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리콜)업무와 효율적 연계를 위해, '16년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에서 총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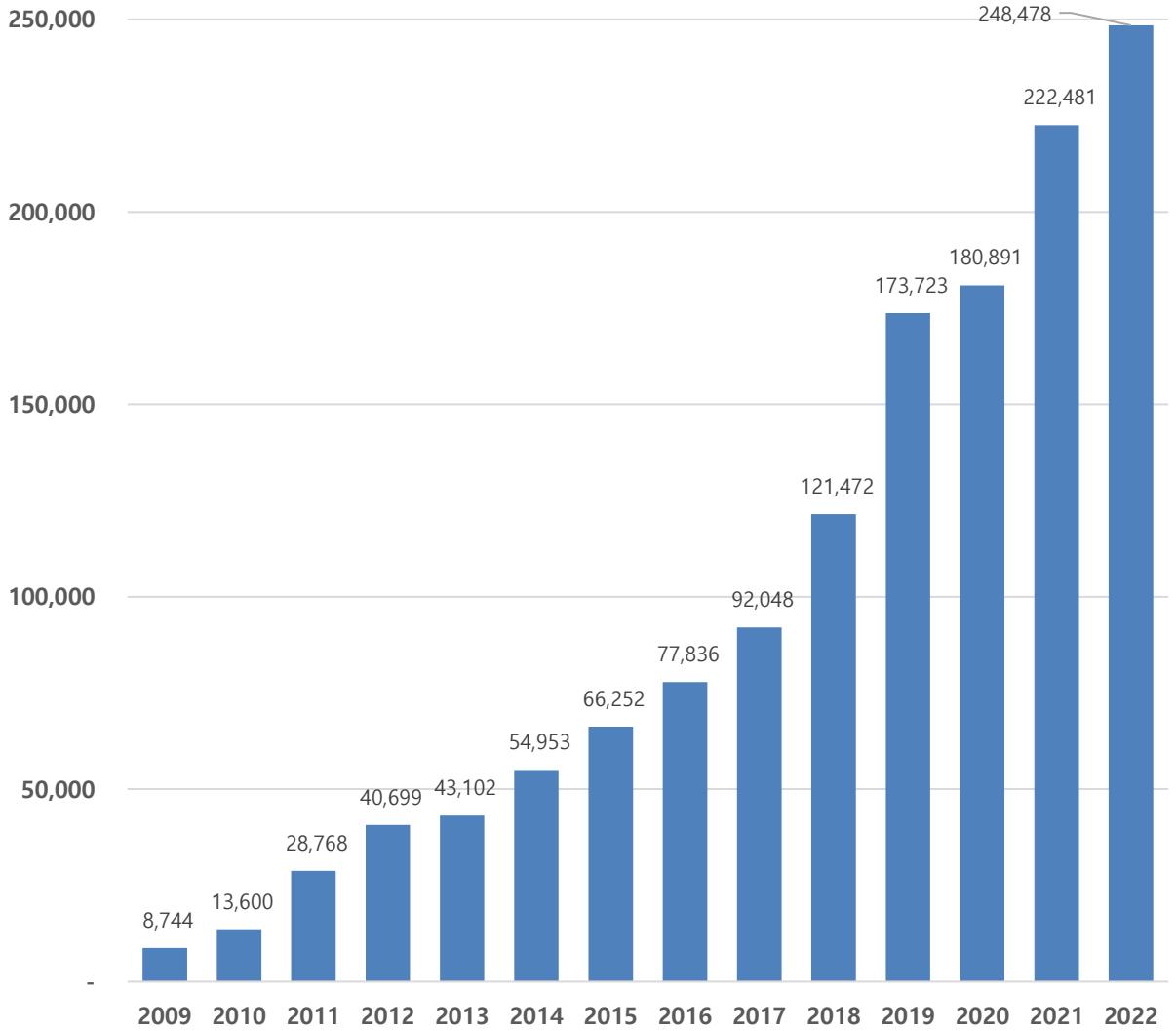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 등록기관 및 등록정보

기관명	부서명	상품군	등록방식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어린이용품/생활용품/전기용품	시스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유아용품/어린이용품	웹
	물이용기획과	먹는샘물	웹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제품	웹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국내 가공식품	시스템
	화장품정책과	화장품	웹
	의약외품정책과	의약외품	웹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	웹
	수입유통안전과	수입식품	웹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체외진단의료기기	웹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 연계 유통채널

유통채널	업체수	유통사 명
대형마트	9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서원유통, 하나로클럽/농협중앙회, 메가마트(대형마트), 토이저러스, 빅마켓, 트레이더스
백화점	7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AK플라자, 롯데백화점
슈퍼마켓	10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농축수협),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이마트에브리데이, 현대그린푸드(슈퍼), 올가홀푸드, 수협유통
편의점	8	비지에프리테일(CU), GS리테일(해군GS25포함),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홈플러스365PLUS, 코레일유통, 이마트24시
온라인몰	24	현대홈쇼핑, CJ오쇼핑, NS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 이마트몰, 신세계몰, 옥션, G마켓, 현대백화점몰, 위메프, 홈앤쇼핑, 티켓몬스터,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AK몰, 인터파크, 롯데닷컴, 한화갤러리아몰, 정관장몰, GS프레쉬몰, 쿠팡, SK스토아, 네이버
식자재	7	현대그린푸드,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동원홈푸드
식품점	2	SPC그룹, CJ푸드빌
전자제품	1	롯데하이마트
중소매장	9	초록마을, 국군복지단, CJ올리브영, (메가마트)판도라, (이마트)몰리스, GS왓슨스, 다이소, 나들가게, 기타매장
합계	78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 연계 매장 현황



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협의체를 운영하여 **자율시정 문화 조성**

-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16개 온라인쇼핑몰사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제품안전관리원 등 2개 유관기관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 중(' 21.8.5. 구성)
- ' 22.1월부터 매월 **신속히 온라인 유통차단이 필요한 불법의심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협의체에 공유 중
 - ✓ ① 다발적으로 민원이 접수, 언론보도, 사고접수 등 이슈화가 되어 **현장조사·단속·행정조치 시행**에 앞서 **유통차단이 즉시 필요한 불법의심 제품**
 - ✓ ② **불법으로 확인되어**, 판매파이지에서 **상품정보 삭제가 요구되는 제품**
 - ✓ ③ '23년부터 **해외에서 리콜 또는 주의로 발표된 제품** 정보도 추가 제공
- 또한, **6개 오프라인 주요 유통관련 협·단체**와도 협력 중

* 체인스토어협회(유통대기업마켓), 편의점산업협회(기업형편의점),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중소마켓), 슈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마켓상품공급), 백화점협회, 전국상인연합회(전통시장)로 구성(23.4월~)

불법의심제품 즉시 판매차단 정보공유 현황(22년)

구분	품목
1월	완구(실내 미끄럼틀), 플러그 및 콘센트(트위스터 콘센트), 전기헬스기구
2월	헬스기구(AB슬라이드), 완구(슬라임, 인형)
3월	완구(개구리알)
4월	전기욕조(발욕조), 완구(블럭완구)
5월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보조밸트)
6월	휴대용 레이저용품, 완구(블럭완구)
7월	완구(스몰덕, 카누들 퍼즐, 넘버블럭 큐브, 나비칼)
8월	완구(치발기),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노리개젖꼭지), 아동용섬유제품(할로윈의상)
10월	관상어용 식물용 히터, 전기욕조(발욕조), 발보온기(발워머)
11월	실내용바닥재

온라인쇼핑몰사 정보공유 예시(불법 구매대행 제품)

30000mAh



01_협조요청 배경

- 소비자가 주요 쇼핑몰에 입점한 구매대행사업자를 통해 KC인증표시가 없는 보조배터리를 구매하는 현상이 급증
- 이에 KC인증을 받은 보조배터리 유통사업자(수입·판매) 피해가 예상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됨

02_제품정보

- 제품군 : 전기용품
- 품목 : 전지(보조배터리)
- 인증구분 : 안전확인신고
- 유통구분 : 해외직구(구매대행)
- 키워드 : #해외직구, #해외직접구매, #구매대행, #전지, #보조배터리, #해외구매대행, #샤오미
- 참고 URL : 각 쇼핑몰에서 "키워드" 검색시 확인 가능

04_요청사항

- 쇼핑몰내 해외직구/구매대행 카테고리를 통해 KC인증 정보 없이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되는 보조배터리 발견시 즉시 삭제
- 만약, 해외직구(구매대행)로 판매되는 보조배터리가 KC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상품판매 등록시 입력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관련 인증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
- KC인증이 필요한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이트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파란색의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KC마크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을 클릭하면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https://kats.go.kr/content.do?cmsid=44>
- 또한, 보조배터리 등과 같이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35개 품목(전기용품, 생활용품)이 쇼핑몰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발견즉시 즉시 판매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_적용법규

- 관련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별표13, 구매대행의 특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4,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법령해석
 - 보조배터리는 전지에 해당되며,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별표13)에 따른 구매대행의 특례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확인신고 및 안전확인표시등이 있는 전지만 국내유통이 가능
 - 구매대행 및 판매중개 사업자는 KC인증표시가 있는 전지 유통시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인증정보를 표시한 후 유통
- 벌칙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25호
- 벌칙적용대상
 -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수입대행한자

온라인쇼핑몰사 정보공유 예시(해외 소비자주의 제품)



01_협조요청 배경

- 2.11(토) MBN 등에서 '미국 CPSC가 베이비 트렌드의 일부 유모차 제품(시트 앤 스텠드 더블, 울트라 스트롤러스) 이 영유아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는 언론 보도됨
 - * 해당 유모차의 앞쪽 캐노피가 접히면서 뒷좌석 아이의 머리나 목을 눌러 사망 또는 상해 우려
- 이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유모차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됨

02_제품정보

- 제품군 : 어린이제품
- 품목 : 유모차
- 인증구분 : 안전확인신고
- 유통구분 : 해외직구(구매대행)
- 키워드 : #해외직구, #해외직접구매, #구매대행, #시트 앤 스텠드 더블, #울트라 스트롤러스, #해외구매대행, #베이비트렌드
- 참고 URL:<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26744?sid=104>

03_적용법규

- 관련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 신고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안전기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판매사용등의 금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중개 및 구매 · 수입대행의 금지)
- 법령해석
 - 유모차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며, 안전확인신고 및 안전확인표시등이 있는 유모차만 국내 유통이 가능
- 별칙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제1항제12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제2항제5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제3항제25호
- 별칙적용대상
 -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 수입대행한자 그리고 수입 · 판매한자



04_요청사항

- 쇼핑몰내 해외직구/구매대행 카테고리를 통해 KC인증 정보 없이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되는 유모차 발견시 즉시 삭제
- 만약, 해외직구(구매대행)로 판매되는 유모차가 KC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상품판매 등록시 입력하도록하여, 소비자가 관련 인증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어린이제품의 경우 KC인증표시 없이 국매 유통(판매중개, 구매대행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쇼핑몰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발견즉시 즉시 판매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유모차에 대한 언론보도는 아래 url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26744?sid=104>

지자체는 관리원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자] 과태료 부과 또는

[제품]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 등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 ① (직무 워크숍 및 현장교육) 일선 현장에서 제품안전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제품안전제도와 행정조치 방법 업무역량 제고
- ② (불법제품 합동 단속) 지역별 특성 및 위해제품 유통관리 취약 지역(학교주변, 재래시장 등)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된 장소 방문
- ③ (리콜이행 점검 지원) 사전 협의된 리콜명령 이행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원 조사원과 직접 방문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

스타트업 제품안전 가이드북



CONTENTS

PART 1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요	5
전안법·어린이제품법 소개	6

PART 2

KC인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KC인증 신청 사전 검토 사항	13
KC인증 준비사항(인증 신청시 필요한 것들)	15
KC인증 진행 과정·결과	17
KC마크 표시.....	18
KC인증 면제.....	22
법 미준수 시 과태료·벌칙	23

가이드북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검색 가능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13&cid=22381&mode=view>)

The screenshot shows the KATS homepage with a search bar at the top. Below it, there'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for HOME, SITEMAP, ENGLISH, and a search icon. The main content area has tabs for 소식 (News), 정책 (Policy), 정보 (Information), and 소개 (Introduction). A sidebar on the left is titled '공지·공고' and includes a dropdown menu with '공지사항' (Notice), '고시·공고' (Notice), 'KS고시·공고' (KS Notice), and '입찰공고' (Bidding Notice).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search result for 'Guidebook' under the 'Guidebook' category. The result shows a list with one item: '2 스타트업 제품안전 가이드북'.

PART 3

KC인증 절차 및 사후관리

KC인증 절차	27
KC인증 후 제품안전관리	30

부록

안전관리 대상품목	34
스타트업지원 관련 인증기관별 연락처	43
창업지원 관련	46

질의 답변

자주 묻는 질의답변	49
------------------	----

감사합니다.